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의안 번호	862

제출연월일 : 2000. 3.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정이유

○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관계법령에 의거 시의 여성정책 및 여성발전위원회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정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며,

○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안산시여성상조례등 2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장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나.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고, 주민에게 최신의 여성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안 제5조 내지 7조)

다. 각종 자문기관의 위촉직 위원정수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고, 공직등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며, 남녀평등의식의 제고와 성차별개선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8조 내지 제11조)

라. 여성복지증진과 영유아보육 및 모성보호시책을 추진하고,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마. 여성의 경제활동, 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16조 내지 제19조)

바. 여성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안산시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내지 제30조)

사. 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능률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단체연합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 내지 제38조)

아.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9조 내지 제46조)

자. 지역사회발전과 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에게 시상하는 안산시여성상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7조 내지 제58조)

차. 남녀차별과 성폭력·가정폭력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산시성차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9조 내지 60조)

□ 조례제정(안) : 별첨

□ 관련법령 발췌서 : 별첨

○ 경기도여성발전기본법

□ 관련사업계획서 : 별첨

□ 예산수반사항 : 별첨

□ 사전예고기간 : 2000. 2. 17~3. 7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무) 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정책

제4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여성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주요여성정책

4. 여성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②시장은 시행계획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통계·자료의 성별 구분) 시장은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 (여성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여성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여성주간행사) 시장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정참여의 확대) ①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등에의 참여촉진) ①시장은 여성의 공직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소속여성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운영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남녀평등의식의 제고) ①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차별의 개선등) 시장 및 관내 모든 직장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소득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및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영유아보육등) 시장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유아보호 및 건전한 교육과 방과후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제15조 (모성보호의 강화) ①시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경제활동의 지원) ①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7조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안산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국제협력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20조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위원회는 시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경제복지국장과 여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공무원과 특별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의견청취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수당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여성과장이 된다.

제30조 (세부사항)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여성단체 연합회

제31조 (여성단체연합회) ①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능률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여성단체활동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여성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 (기능)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단체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조지원
2. 소외계층 자원봉사활동 및 이웃돕기 추진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도모
4. 기타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33조 (자격) 연합회의 회원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34조 (가입) ①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장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 1부
2. 회칙 또는 정관 1부
3. 가입결의서 및 임원현황 1부
4.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1부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입신청이 있으면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입을 승인한다.

제35조 (구성) ①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1인
4. 감사 2인

②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재임기간중 임원의 결원 발생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업무를 통할하며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36조 (회의) ①회장은 연합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12월중에 임시총회는 매월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회원의 탈퇴)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탈퇴 시킬수 있다.

1. 회원이 연합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
2.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재정) ①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사업수입
2. 시의 보조금
3. 기타수입

②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39조 (기금의 설치등) ①시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0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5.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6.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항
7. 기타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의 범위안에서 사용한다.

제41조 (기금관리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심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②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 한다.

③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4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경제복지국장
2. 기금출납원 : 여성복지팀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 기금을 지원받는 자가 지원목적외의 사용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6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안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안산시여성상

제47조 (안산시여성상)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 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안산시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48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여성상의 시상부문은 훌륭한어머니·평등·봉사·예능·신지식인등 5개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1명씩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상자에게는 표창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49조 (시상시기) 여성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 (수상대상자) ①여성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예정일 현재 안산에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는 자중에서 심사·선정한다.

②이미 여성상을 받은 사람과 안산시문화상조례에 의하여 상을 받은 사람은 여성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제51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수상후보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 및 여성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 및 여성단체장이 추천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52조 (수상대상자의 선정) 수상대상자는 안산시여성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하되, 시장이 작성·제출한 심사자료에 의거 개인별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제5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과 학계·예술단체·여성단체등에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경제복지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그 해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54조 (소집) 공적심사위원회는 시장이 서면으로 소집한다.

제5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외에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진행 및 심사총괄
2. 심사·선정된 수상대상자의 결정선언
3. 심사평의 발표

제56조 (수상대상자의 결정) 수상대상자는 각 부문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7조 (간사와 서기) ①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사회여성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복지팀장이 된다.

제58조 (실비변상)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성차별신고센터

제59조 (성차별센터의 설치) 시장은 남녀차별·성폭력·가정 폭력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산시성차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0조(유급상담원) 신고센터에는 2인이내의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유급상담원의 보수와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61조 (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등에 대하여는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안산시여성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안산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안산시여성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62

제안년월일 : 2000. 3. 16.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9조 제1항은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 안 제12조 제2항은 요보호 여성의 예방 활동을 법규정 범위내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예방활동은 현실을 파악하여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여성단체연합회와 관련하여 규정한 안 제31조 내지 제38조는 여성단체연합회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이를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9조 1항을 "시장은 공무원을 공개경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 안 제12조 제2항 중 "시장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을 "시장은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수정함.

○ 안 제31조 중 "여성단체 상호간의"를 "여성단체는 단체상호간의"로 하고, "둔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함.

○ 안 제32조를 "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함.

○ 안 제33조를 "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함.

○ 안 제34조 내지 제38조를 각각 삭제함.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공직등에의 참여촉진)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공무원을 공개경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의 복지증진) 제2항 중 "시장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을 "시장은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한다.

제31조(여성단체연합회) 중 "여성단체 상호간의"를 "여성단체는 단체 상호간의"로 하고, "둔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구성등) 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경비 보조등) 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내지 제3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9조를 제34조로, 제40조를 제35조로, 제41조를 제36조로, 제42조를 제37조로, 제43조를 제38조로, 제44조를 제39호로, 제45조를 제40조로, 제46조를 제41조로, 제47조를 제42조로, 제48조를 제43조로, 제49조를 제44조로, 제50조를 제45조로, 제51조를 제46조로, 제52조를 제47조로, 제53조를 제48조로, 제54조를 제49조로 제55조를 제50조로, 제56조를 제51조로, 제57조를 제52조로, 제58조를 제53조로, 제59조를 제54조로, 제60조를 제55조로, 제61조를 제56조로, 제62조를 제57조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9조(공직등에 참여촉진) ①시장은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시행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9조(공직등에 참여촉진) ①시장은 공무원을 공개경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여성의 공직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원안과 같음)
제12조(여성의 복지증진) ①(생략) ②시장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소득 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④(생략)	제12조(여성의 복지증진) ①(원안과 같음) ②시장은 저소득 모자가정..... .... ③~④(원안과 같음)
제31조(여성단체연합회) 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능률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여성단체 활동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여성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여성단체연합회) 여성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구성할 수 있다.
제32조(기능)연합회는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여성단체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조지원 2.소외계층 자원봉사활동 및 이웃돕기 추진 3.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도모 4.기타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32조(구성등) 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자격) 연합회의 회원은 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33조(경비 보조등) 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원 안	수 정 안
제34조(가입) ①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가입신청서 1부. 2.회칙 또는 정관 1부. 3.가입결의서 및 임원현황 1부. 4.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1부.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입신청이 있으면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입을 승인한다.	(삭 제)
제35조(구성) ①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부회장 1인 3.총무 1인. 4.감사 2인 ②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재임기간중 임원의 결원 발생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 업무를 통할하며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삭 제)
제36조(회의) ①회장은 연합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12월중에 임시총회는 매월1회 회장이 소집한다.	(삭 제)

원 안	수 정 안
③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회원의 탈퇴)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탈퇴시킬 수 있다. 1.회원이 연합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 2.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38조(재정) ①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사업수입 2.시의 보조금 3.기타수입 ②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삭 제)
제39조(생략)	제34조(원안 제39조와 같음)
제40조(생략)	제35조(원안 제40조와 같음)
제41조(생략)	제36조(원안 제41조와 같음)
제42조(생략)	제37조(원안 제42조와 같음)
제43조(생략)	제38조(원안 제43조와 같음)
제44조(생략)	제39조(원안 제44조와 같음)
제45조(생략)	제40조(원안 제45조와 같음)
제46조(생략)	제41조(원안 제46조와 같음)
제47조(생략)	제42조(원안 제47조와 같음)
제48조(생략)	제43조(원안 제48조와 같음)

원 안	수 정 안
제49조(생략)	제44조(원안 제49조와 같음)
제50조(생략)	제45조(원안 제50조와 같음)
제51조(생략)	제46조(원안 제51조와 같음)
제52조(생략)	제47조(원안 제52조와 같음)
제53조(생략)	제48조(원안 제53조와 같음)
제54조(생략)	제49조(원안 제54조와 같음)
제55조(생략)	제50조(원안 제55조와 같음)
제56조(생략)	제51조(원안 제56조와 같음)
제57조(생략)	제52조(원안 제57조와 같음)
제58조(생략)	제53조(원안 제58조와 같음)
제59조(생략)	제54조(원안 제59조와 같음)
제60조(생략)	제55조(원안 제60조와 같음)
제61조(생략)	제56조(원안 제61조와 같음)
제62조(생략)	제57조(원안 제62조와 같음)